

신구대조표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		비고
현행	제 · 개정(안)	
<p>제6조(운영위원회) <u>장대현중고등학교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— 1. 위원장: 학교장</p> <p>— 2. 부위원장: 교감</p> <p>— 3. 위 원: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, 행정실장, 학부모회장</p> <p>— 4. 간 사: 사감교사</p>	<p>제6조(운영위원회) <u>장대현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기숙학교로 별도의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p>1~4 <삭제></p>	
<p>제8조(회의) <u>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, 사감교사의 건의에 의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(단, 운영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회의) <u>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교 운영위원회 절차에 따른다.</u></p>	